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05년 11월 일

발의자 : 조선제 의원 외

1. 제정이유

- 농기계의 발전과 확대 공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수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농기계의 피해에 따른 농업인들의 정신적 재산상의 손실이 극심하고 이로 인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적 보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 농기계 사고와 농기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사고 등 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안전보험과 수해나 화재 등 농기계의 피해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을 대상으로 함(안 제4조)
- 지원 범위는 군비 지원액이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총 지원액이 1농가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 지원금의 신청은 보험 가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농작물 재해보험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한다.

제3조(보험 가입권장) 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국·도비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해 지원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